

윤리규범

제1장 총칙

1. 목적

-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윤리규범(이하 "윤리규범"이라 한다)은 윤리현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- 윤리규범은 현대중공업터보기계(주)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윤리규범의 운영

-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담당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, 윤리규범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담당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.
- 임직원은 본 윤리규범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,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는 의미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.

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

1. 고객감동

-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-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항상 노력한다.
-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고객만족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,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.

2. 고객의 이익 보호

-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.

제3장 주주존중

1. 주주가치 극대화

-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.
-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, 주주 및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한다.

2. 기업회계기준의 준수

- 회계자료는 '국제회계기준(IFRS)'에 따라 기록, 관리하며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제공한다.

제4장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

1. 국내외 법규준수

-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, 국내 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규범을 준수한다.
-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한다.

2. 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

- 생산성 향상,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.
-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,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.

제5장 협력사와 공동번영

1. 평등한 기회

-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한다.

2. 공정한 거래

-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,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

를 하지 않는다.

3. 상호발전의 추구

-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.

제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

1. 임직원 존중

-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한다.
- 업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.

2. 공정한 대우

-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하게 제공한다
- 임직원의 성별, 학력, 연령, 출신지역, 신체장애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.

3. 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

-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,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며, 자아실현을 지원한다.

4. 안전한 작업환경

- 회사는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,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- 회사는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,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.

제7장 임직원의 기본자세

1. 임직원의 기본윤리

-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.

-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,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,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임직원은 직무 수행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, 직업윤리 의식을 지니며 근무한다.

2. 사명의 완수

-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거하여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-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며,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.

3. 공정한 직무수행

-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
-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, 거래상대방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.

4. 임직원 상호 관계

- 임직원은 상호간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- 임직원 상호간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선물제공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,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.

5. 근로환경 및 안전관리

-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한다.

제8장 부칙

1. 시행시기

- 본 윤리규범은 2020년 11월 9일부로 시행한다.